

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신고인 인적사항

①소재지				
②법인명		③대표자성명		
④사업자등록번호		⑤사업연도		⑥전화번호

2.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

⑦과세표준				
⑧산출세액 (미납세액, 미납일수, 세율)	(,	, 2.2/10,000)	
⑨가산세액				
⑩총부담세액				
⑪기납부세액				
⑫환급예정세액				
⑬차감납부할세액				
⑭분납할세액				
⑮차감납부세액				
⑯총당후납부세액				
⑰국세환급금 총당신청	환급법인세			
	총당할 농어촌특별세			

신고인은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⑦과세표준란 및 ⑧산출세액란: "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12호서식)"의 ⑧·⑫소계란 중 ②과세표준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2. ⑩총부담세액란: ⑥산출세액란의 금액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(⑨)을 더하여 적습니다.
* 가산세액(⑨)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를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합니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3. ⑫환급예정세액란: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(=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감면세액 × 20%)을 납부한 이후 감면분 추가납부 등으로 환급이 예정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⑭분납할 세액란: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
5. ⑯총당 후 납부세액란: ⑮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에서 ⑰란 중 총당할 농어촌특별세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⑰국세환급금 총당신청란: 법인세를 환급받는 법인이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총당하려는 금액(⑰총당할 농어촌특별세 ≤ ⑮차감납부세액)을 적습니다.